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계열사 펀드 판매비율 공시내용 확대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신탁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마련)
- 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)
- 라. 표준투자권유준칙 (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및 설명의무)
- 마.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(IPO 수요예측등 기간 연장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3/4/13 개정 · 2023/4/1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감원의 '계열사펀드 판매규제 실태점검'(2022.12.) 결과, 규정상 판매비중이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시 강화 요구
 - 2018년 6월 계열사펀드 판매비율 규제 강화(50%→25%)시 산정 제외항목을 MMF 등 8개 항목으로 확대
- 기타 판매수수료 공시 관련 좋아 중복 및 법령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규정 불비 해소를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계열사 펀드 판매현황의 실제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판매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확대(제2-8조의2)
 - 제외항목 차감 전 실제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을 함께 공시하고 두 비중 간 차이가 클 경우 주요 사유를 기재토록 함
- 판매수수료 월간공시 조항을 삭제하여 수시 공시사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, 신탁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마련(제6-9조 신설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3/4/28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3.4.13.)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및 조문 정리 등을 위함
 - 계열사펀드 판매비중 공시 확대(제2-8조의2 제9항), 판매수수료 공시 중복조항 삭제(제4-73조), 신탁업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근거 마련(제6-9조)

2) 주요 내용

- 계열사펀드 판매 현황(별지 제54-1호)
 - 제외항목 차감 전 실제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을 함께 공시하고 두 비중 간 차이가 클 경우 주요 사유를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
- 판매수수료(제30조, 별지 제16호 삭제)
 - 관련 중복 조문 · 서식을 삭제
- 신탁업자 의결권 행사 공시(제44조의2, 별지 제29-1호)
 - 의결권 행사 공시 조문 및 서식을 신설

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3/4/27 개정 · 2023/5/1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「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」(2022.12.19)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
 -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및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신설
 - 대표주관회사, 공동 대표주관회사, 주관회사, 공동 주관회사 등 명칭을 불문하고,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회사를 말함
-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 연장 및 우선배정 비율 조정 필요
 - 2023년말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일몰 예정과 관련하여, 최근 세법 개정 등 정책방향을 반영

1) 제5조의3 및 제1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,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

- 벤처기업투자신탁 : 30%(코스닥 한정) /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: 5%

□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제재 운영 기준 합리화

- 의무보유 확약위반시 제재금 부과시에만 구체적인 제재의 감면 기준이 존재하고, 수요예측 참여 제한 부과 경우에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개선
-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대표주관회사가 확인 방법이 부재하여 개선

2) 주요 내용

가)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신설

□ 금융투자업규정(제4-19조 제8호) 개정에 따라 기업공개에 위한 주관회사가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'협회가 정하는 바'를 정함(제5조의3 제1항~제3항, 제6항)

- (표준방법)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은 자기자본,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등 참여 건(계좌)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
 - 예) A운용사가 10개 공모펀드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, 10개 펀드의 총자산의 합계액을 의미
 - 이 경우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(자료 부재시 전전 분기말) 개별 재무제표상 금액으로,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(설립일부터 3개월 미경과시 운용기간) 일 평잔으로 함
 -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동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(외사 국내지점은 지점장)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
 -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
- (대체방법) 주관회사의 대표이사(외사 국내지점은 지점장) 또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으로 마련한 내부규정·지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
 - 이 경우 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확인방법을 기재하고, 하나의 IPO를 둘 이상의 주관회사가 주관하는 경우 회사별로 상이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

나)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금지

-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(매입희망 물량 × 가격)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됨(제5조의3 제4항)
 - 가격을 미제시하는 경우, 공모 희망가격의 상단

-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시 해당 참여건에 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(제5조의3 제5항)
 - 예) A사가 공모펀드 계좌, 코스닥벤처펀드 계좌 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, 공모펀드 계좌만 수요예측 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한 경우 공모펀드 계좌만 공모주 배정 금지
 - 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(제17조의2 제1항)

-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시,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자로 지정
 - 최초 발생건으로서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면제하고,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가중하여 제재를 부과(별표 1 중 감면 1-2)
 - 예) A종목 IPO(2024.3.1.)에서 위반금액 1억원, B종목 IPO(2024.9.1.)에서 위반금액(배정받은 주식수×공모가격) 3억원 발생시 → B종목 위규 발생에 따라, 수요예측 참여제한 시 11개월(3억원 기준 참여제한 기간 7개월에 50% 가산) 부과

다)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및 우선배정 비율 조정(제9조 제1항, 제2항, 부칙 제2조, 제3조)

- 혁신·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비유량 채권 투자수요 확충등을 위해 일몰(2023.12.31.)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의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
 - 채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코스닥시장 IPO·공모증자의 경우 2024년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불량 중 5%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이전

[IPO 공모주식 배정비율]

구분	IPO시장	우리사주조합	일반청약자	기관투자자		
				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	벤처기업 투자신탁	그 외
기존	유가증권	20% 이내	25% 이상	5% 이상	-	잔여물량
	코스닥	20% 이내	25% 이상	5% 이상	30% 이상	잔여물량
개정	유가증권	20% 이내	25% 이상	5% 이상	-	잔여물량
	코스닥	20% 이내	25% 이상	10% 이상	25% 이상	잔여물량

-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상 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’이 도입되는 경우,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분에 포함하여 우선배정을 적용할 예정
 - 2023년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라)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관련 제재 개선(제17조의2 제1항, 별표 1)

□ 의무보유 확약위반에 대한 제재

- 확약준수율이 70% 이상인 경우에는 확약준수율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참여제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
- 기관이 대표주관회사의 의무보유 확약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근거 마련

라. 표준투자권유준칙 (2023/4/13 개정 · 2023/4/1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외화MMF의 도입에 따라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도 산정 및 설명의무 이행 방법을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에 반영
 - 정책당국은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충족을 위해 단일통화 외화 MMF를 도입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및 제241조 개정, 2022.8.30.)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22. 12. 8.)에 따라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및 설명의무(준칙 14, 15)

- 외화로 투자하는 투자성 상품 판매 시 환율 변동 위험을 위험 등급에 반영하여 설명하도록 명확히 함
 - 외화 MMF와 같이 기존 보유한 외화로 환전 없이 투자되어 환율변동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

※ <참고 : 외화MMF 상품 개요>

① 상품구조 : 원화 MMF와 동일

② 위험등급 :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

③ 투자대상 : 미국채 및 정기예금에 주로 투자하고, 신용물은 제한적으로 편입. 편입자산의구체적인 편입비율 · 듀레이션등은 펀드운용사별차이 有

-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받는 수단 확대(시행령 제11조 제2항, 제12조 제5항, 제13조 제9항, 준칙 7)
 - 적합성·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관련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받는 방법으로 전자적 수단을 포함
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(ex. 휴대폰인증, PIN인증, 신용카드인증 등)
 - 시행령 개정 전 '서명(전자서명 포함), 기명날인, 녹취'만 가능

- 불초청권유금지 범위 확대 및 사전 안내 프로세스(시행령 제16조 제1항, 준칙 13)
 - (대상범위 확대) 불초청권유금지 대상 범위를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계약, 사모펀드, 장내파생상품으로 확대
 - 장외파생상품은 기존과 같이 일반·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 불초청권유금지 유지
 - (사전안내 프로세스 신설) 개인정보 취득경로,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·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(사전안내)하고 동의받는 경우 방문·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 가능
 - 단, 다음의 경우 사전안내 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부터 먼저 권유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
 - ①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: 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계약, 사모펀드, 장내 파생상품, 장외파생상품
 - ②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: 장외파생상품

- 고난도투자일임계약·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(시행령 제37조 제2항, 준칙 17-②)
 -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숙려기간(2영업일 이상)이 경과한 날을 청약철회권(7일) 기산일로 명확화

-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의 보관 기간 합리화(시행령 제26조 제2항, 준칙 24)
 -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료의 유지·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으로 합리화

-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설정 범위 명확화(참고 1, 참고 2)
 -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12~24개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해외 사례 문구 삭제
 - [참고1] 「일반금융소비자」투자자정보 확인서(예시2) 중 “일부 해외회사의 경우 정보유효기간을 12~36개월로 설정하고 있음”
 -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24개월 초과하여 설정하는 등 업무 혼선을 방지

마.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(2023/4/27 개정 · 2023/7/1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위의 「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」(2022.12.19)에 따른 수요예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IPO 수요예측등 기간 연장 권장

- (기존) 수요예측 기간 관련 별도이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IPO가 2영업일간 수요예측 진행
- (개정) 내실 있는 수요예측을 위하여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모범기준에 명시
 - 단,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일정, 시장 상황, 공모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기간 단축 가능

□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 마련

- (기존)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공모주를 배정
- (개정) 공모주 상장 후 추가급등록 방지 및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
 - 의무보유 확약 여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,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의 각 사별 적절한 배정기준을 마련
 - IPO 종목 또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음

[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가장 높은 가중치 예시]

기준										
구분	참여일		의무보유 확약 기간				IPO 기여도			
	1일차	2일차	3개월	1개월	15일	미확약	상	중	하	
가중치	2	1	3	2	1.5	1	3	2	1	
개정										
구분	참여일			의무보유 확약 기간				IPO 기여도		
	1일차	2일차	3~5일차	3개월	1개월	15일	미확약	상	중	하
가중치	3	2	1	5*	4*	1.5	1	3	2	1

*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최고 가중치 부여

2)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시행

□ 수요예측시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금지

- (기존) 수요예측시 공모주의 가격을 미기재하는 관행으로 인해 공모주 가격발견에 대한 기여도 없이 공모가 인상을 야기한다는 비판
- (개정)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공모주의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
 - 단,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